

1. 통합공고 개정고시

협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수입의 경우 수입 추천(신고)과 통관전 예정신고의 이중적 요건 확인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개선을 목적으로 약사관리상 불가피한 '수입완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통관예정신고를 면제해 줄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통합공고중 개정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96호 : 94. 7. 12)에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다.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개정 내용 (시행일 : 1994년 7월 12일)

변경 전	변경 후
<p>총 칙 제22조 제5항동물의약품등을 수입하는자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3일전까지 통관 예정신고서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수입 물품이 안전성, 유효성, 함량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p> <p>별표1 품목별 수입요령 2309 90 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과 2309 90 3030 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p>	<p>총 칙 제22조 제5항 국가검정 동물의약품을 수입하는자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3일전까지 통관 예정 신고서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p> <p>별표 1 품목별 수입요령 2309 90 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과 2309 90 3030 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신고를 필할 후 수입 할 수 있음</p>

2. 고용보험 안내

정부에서는 신경제계획의 일환으로 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고용보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됩니다.

— 노동부 고용보험과 —

- 고용보험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질병(의료보험), 노후(국민연금), 산업재해(산재보험)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에 이어 실업이

라는 걱정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차원을 넘어 경기변동·산업 구조변화에 따라 기업이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행하며, 종전보다 인력을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적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는 고령자 부녀근로자등의 고용과 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므로 기업은 인력부문에 있어서 고용보험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은 지난 '93. 12. 27 제정되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고용조정 및 직업훈련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수준을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의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과 중장기 재정추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고용보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제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 고용보험제의 주된 사업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실직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만이 수혜대상인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사업주도 수혜대상이 되며, 그중에서도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주된 수혜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제에서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여 설정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 고용보험제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2개월이상 근로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임금의 50%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되며,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30일~210일을 한도로 지급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실업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고용보험재정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위하여 빠른 시간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직율의 감소는 물론 인력확보가 좀더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로 한정됨으로써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실직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발적 이직이 들어날 소지를 배제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이직후의 생계지원으로 종전보다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알선 등을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기간동안에 실업급여를 계속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체계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고용변동상황을 전산관리하게 되고,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인력을 구하는 기업에게 구직정보 및 노동시장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토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구직정보의 풀(Pool)을 이용할 수 있게되고, 중도채용자는 물론 신규취업자에 대한 구인시의 임금정보를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등으로 나누어 생생하게 제공받음으로써 구인에 소요되는 탐색비용(Search Cost)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간, 기업규모간, 지역간의 인력이동 상황까지도 알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인력수급계획 수립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인력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장래의 고용불안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가능하면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기업으로 전직하려 할 것임은 쉽게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도 구인처를 확인할 때 고용보험의 적용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며, 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는 취업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으로는 전직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 그 결과 노동시장은 이분화가 가속되어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는 현재의 인력이 빠져나가는 반면 신규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체계는 기업의 직업훈련비용등을 지원합니다.

- 오늘날의 산업환경은 기술의 급변, 다양한 상품수요의 변화,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술에의 적용과 다기능 습득을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가 경쟁에서의 승리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능공의 부족과 함께 시설의 부족, 훈련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기존인력에 대한 투자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능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인력양성 대신에 동종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인력을 스카우트함으로써 불필요한 임금상승과 기업간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 고용보험체계는 이제까지의 직업훈련의무제와는 달리 기업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시킬 때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체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안정사업 : 고용보험체계는 기업의 고용조정비용등을 지원합니다.

-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 생산기술변화 등에 신속히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산업구조조정에 적절히 대응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 필요 한 경우 조업단축, 휴업, 인력의 배치전환등의 고용조정 조치를 그 때마다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고용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이 전부 부담해 왔으나 고용보험에서는 휴업수당 및 배치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조정은 대부분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때 발생하므로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자금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고령자 또는 부녀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체계는 고령자 또는 부녀근로자들의 채용 또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기업에 다양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면서 고령자 또는 부녀근로자를 채용하여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료의 부담수준은 크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의 부담수준은 임금총액의 1.5% 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며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1/2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 1/2를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시행령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0% 내외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수준이 훨씬 작아집니다.

- 이와같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수준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 인력확보, 원활한 고용조정,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에 의한 생산성 향상까지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용부담 수준보다는 수혜수준이 훨씬 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용보험체계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중소기업이 주된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등 고용보험체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